

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 반 의 안  
(2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24 - 6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1
2024 - 67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과)	15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4 - 66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 1. 제안이유

- 신원면 대현마을은 4개 자연마을(상대,중신기,중대,하대) 36가구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기존마을회관 노후(35년이상 경과) 및 시설규모 협소(현 규모, 84㎡),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주민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 도로부지내 위치한 불법건축물로 양성화 또한 불가하며, 연접산지 토사유출, 축대 붕괴 위험 등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계획된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으로 마을진입부 연접 농지를 매입하여 커뮤니티센터를 신축(기존마을회관→철거)하고자함

※ 신원면 (기존)대현마을 회관

위 치	건축면적	건축년도	주요 참고사항
대현리 935-2(도로)	84㎡	불명 (35년 이상 경과)	개인도로부지 내 건물 위치 → 건축물대장 없음, 건물양성화 불가



## 2. 주요내용

###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3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8. ~ 2024. 12.
- 사업비 : **995백만원**(군(전환) 70%, 군 30%) - 마을 자부담 5백만원 별도
- 사업내용 : 마을안길 정비 및 생활환경개선 1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교통인프라 및 안길정비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포함)	마을회관 철거 및 정비	부대 경비	비고
사업비	<b>995</b>	390	<b>500</b>	25	80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1)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면적(m <sup>2</sup> )				
취득	토지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34	1,613	<b>5,807</b>	2024	커뮤니티센터 신축	

※ 1)기준가격 적용 : 토지 → 현.기준 공시지가

- 취득 토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 : 첨부 2 참조

### 다. 추진경과

- 2022. 7. : 공모사업 선정
- 2022. 10. ~ 2023. 12. : 기본계획(안) 수립 및 주민협의  
- 당초 공모사업 선정 사업계획(안)에 사업 실효성 논란, 토지 확보  
문제 등으로 기본 계획 수립 지연
- 2024. 1. ~ 8. : 마을안길 정비 및 생활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2024. 3. ~ 5. :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 라. 향후계획

- 2024. 6. : 커뮤니티센터 신축예정지 보상협의
- 2024. 7. ~ 2025. 2. :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

#### 마. 기대효과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으로 인한 주민이용성 확보
- 기초서비스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주여건 조성
- 농촌환경개선과 주민편익제공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첨부1 참조

## 첨부1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첨부2

## 취득토지 용도지역 참고자료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34번지		
지목	전	면적	1,613㎡
개발공시지가 (㎡당)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축)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낫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며추리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추가기재>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㉔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 1. 제안이유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하여 이를 매입하여 건립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 위치 :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6. / 5년
- 사업량 : 부지규모 30,000㎡정도, 건물면적 3,000㎡(1동 / 지상 2층)  
▶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조경시설 등
- 사업비 : 19,800백만원(국 4,155.9, 도 890.55, 군 14,753.55)  
※ 부지매입비, 기반공사 및 주민지원(인센티브) 별도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45필지, 335,031㎡ / 첨부1 참조

#### 다. 추진경과

- 2022. 9.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종합 기본계획 수립
- 2022. 12. :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23. 1. : 화장시설 건립 전담 부서 신설(전략담당관)
- 2023. 2. :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구성
- 2023. 2.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1개소 신청)
- 2023. 5.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3. 6.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심의(부적합 결정)
- 2023. 7. ~ : 선진화장시설 벤치마킹, 주민설명회 등
- 2023. 10. ~ : 후보지 사전검토 요청지 현장 방문 등
- 2024. 2.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
- 2024. 4.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접수(9개소 신청)
- 2024. 5.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심의(1개소 선정)

#### 라. 향후계획

- 2024. 6. : 국도비 신청 및 행정절차 이행 착수
- 2024. 7. :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 2024. 9.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24. 10. :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정
- 2024. 12. : 건립 부지매입 완료
- 2025. 6. : 설계 완료 및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25. 7. : 공사 착공
- 2026. 6. : 공사 완료

#### 마. 기대효과

-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
- 친환경적인 화장시설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장례비용 절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용 편의 제고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첨부2 참조

# 첨부1

##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계		45필지		335,031	335,031	1,644,720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46	과수원	5,477	5,477	93,109 (17,000원)	2024.12.	화장시설 건립사업  공모선정 대상지 취득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45	과수원	433	433	7,361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44	과수원	439	439	7,463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43	과수원	394	394	6,698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42	과수원	429	429	7,293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41	과수원	959	959	16,303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35	과수원	556	556	9,452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34	과수원	493	493	8,381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33	과수원	511	511	8,687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32	과수원	544	544	9,248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31	과수원	519	519	8,512 (16,4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30	과수원	522	522	8,874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29	과수원	559	559	9,503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1228-28	과수원	597	597	10,149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27	과수원	541	541	9,197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26	과수원	523	523	8,891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25	과수원	250	250	4,850 (19,4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산 149-79	임야	45	45	19 (412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산 149-77	임야	52	52	21 (41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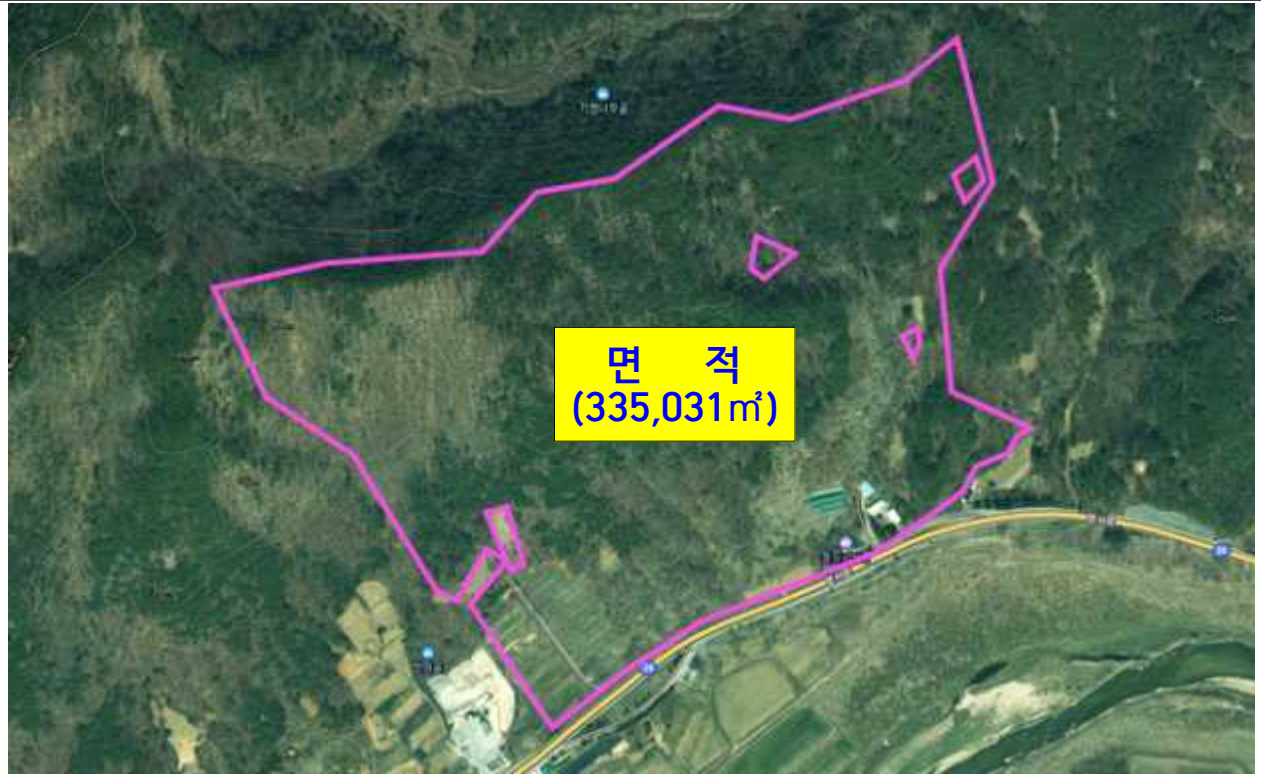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산 149-78	임야	31	31	13 (412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산 149-81	임야	71	71	27 (383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산 149-82	임야	48	48	18 (383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1	과수원	36,352	36,352	734,310 (20,2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40	과수원	1,081	1,081	18,377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39	과수원	532	532	9,044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38	과수원	540	540	9,180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37	과수원	560	560	9,520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36	과수원	528	528	8,976 (17,0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산 149-4	임야	271,570	271,570	180,051 (663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산 149-67	임야	51	51	21 (418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산 149-80	임야	145	145	50 (344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77	과수원	198	198	2,911 (14,7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76	도로	84	84	454 (5,41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80	양어장	1,549	1,549	23,545 (15,2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2	대지	212	212	20,967 (98,9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3	잡종지	556	556	55,266 (99,4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228-4	잡종지	2,194	2,194	182,980 (83,4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170	답	347	347	5,934 (17,1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171	전	145	145	5,206 (35,9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172	전	539	539	41,773 (77,5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172-1	양어장	1,124	1,124	17,085 (15,200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172-2	전	420	420	32,550 (77,5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172-3	전	466	466	36,115 (77,5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1172-5	잡종지	196	196	15,190 (77,500원)			
취득	토지	남하면 대야리 산 149-98	임야	1,649	1,649	1,147 (696원)			

※ 지목별 현황 : 과수원 53,537㎡/24필지, 임야 272,013㎡/8필지, 기타 7,832㎡/12필지

**참부2**

**위치도 및 전경도**



위치 :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



전경사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4 - 67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시설명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19

다. 시설현황 : 793.81㎡(교육센터 496.81, 온실 297)

주요시설 및 면적(㎡)		용도	
교육센터	계	496.81	
	1층	115.06	교육장
	2층	211.48	주민휴식공간 (당초 휴게음식점)
	3층	170.27	교육장 및 영상관
유리온실		297.00	교육 및 체험

라.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마. 위탁사무

-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 그 밖에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위탁비용 : 131,521천원(연간)

사.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선정

아. 선정기준

-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고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 평가
  - 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산출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응모기관이 1개인 경우 종합점수가 70점 이상 시 수탁자 선정
  - 응모기관이 없거나, 기준 미달 시 재공고

### 3. 참고사항

#### 가. 향후계획

- 2024. 8. ~ 9. :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 2024.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4. 11. ~ 12. : 협약 체결 및 시설물 점검
- 2025. 1. : 위탁운영 실시

#### 나. 관계법령 : 붙임참조

-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다. 위탁운영계획 : 붙임참조

## 붙임1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추진코자 함

## 1 법적근거

-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2 시설물 현황

- 시설물 : 793.81㎡(교육센터 496.81, 온실 297)

시설명(위치)	면적(㎡)		용도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19)	계	496.81		
	교육센터	1층	115.06	교육장
		2층	211.48	주민휴식공간 (당초 휴게음식점)
		3층	170.27	교육장 및 영상관
	유리온실	297.00	교육 및 체험	

## 3 그간 추진사항

- 2020. 12.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사업 준공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 '16년) 선정 및 추진
  - 사업비 : 2,200백만원(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0%)
- 2021. 2. 8. ~ 2023. 11. 30.
  - 농업회사법인 (주)강과사람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
  - 관리운영 재정 악화로 인한 수탁 포기(2023. 11. 30일자)
- 2023. 12. 1. ~ : 직영 관리(기간제근로자 1명 상시근무)
- 2024. 3. ~ 6. : 상반기 환경교육 프로그램(기후변화 등) 및 운영

※ 교육장 대관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5. 24.기준)

계	회의실 대관		환경교육 프로그램(3월~6월)	
	횟수	인원	횟수	인원
43회 / 784명	21회	322명	22회	462명

## 4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위탁사무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 그 밖에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선정
- **위탁비용 : 131,521천원(연간)**

※ 위탁비용 산출방법 : 운영원가 - 추정수입

① 운영원가 : 167,831천원 정도

(단위 : 원)

구분		민간위탁 원가	구성비	비고
인건비	직접인건비	113,859,156	67.8%	- 상시근무 3명 기준 (관리자 1, 운영자 2) - 정부 노임단가 기준 중소제조업 적용
	간접인건비	-	0.0%	
	인건비 합계	113,859,156	67.8%	
경비	인적보험료	11,113,308	6.6%	4대 보험료 (국민연금 등)
	복리후생비	2,082,351	1.2%	최근 3년간 실소요 경비 평균치 적용
	전력비	6,033,258	3.6%	
	용수비	350,480	0.2%	
	수리수선비	438,727	0.3%	
	홍보광고비	330,909	0.2%	
	통신비	589,446	0.4%	
	소모품비	7,615,570	4.5%	
	안전점검비	4,562,726	2.7%	
	기타경비	2,606,723	1.6%	
	경비 합계	35,723,498	21.3%	
순원가		149,582,654	89.1%	인건비 + 경비
일반관리비(2%)		2,991,653	1.8%	(순원가) × 2%
이윤(10%)		-	0.0%	미산정
위탁원가		152,574,307	90.9%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10%)		15,257,430	9.1%	(운영원가) × 10%
<b>총 위탁원가</b>		<b>167,831,737</b>	<b>100.0%</b>	(운영원가 + 부가가치세)

※ 노임단가는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연간 상승률은 미반영함

## ② 수입추정 방법

- 카페수입금(음료 등), 시설대관료(회의실, 영상관 등), 프로그램 운영 수입(전 위탁자 3년간 수입액 평균치로 산정) (단위 : 천원)

구분	평균	2023	2022	2021	비고
금액	36,310	33,290	34,888	40,753	

- 추정 수입분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초과 수입은 운영비 재투자

## ○ 수탁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고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 평가
  - ▶ 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산출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 응모기관이 1개인 경우 종합점수가 70점 이상 시 수탁자 선정
  - ▶ 응모기관이 없거나, 기준 미달 시 재공고

## 5 향후계획

- 2024. 6.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4. 8. ~ 10. :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24. 11. ~ 12. : 협약 체결 및 시설물 점검
- 2025. 1. ~ : 수탁자 센터 운영 관리

## 6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 및 활성화
-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 제공으로 환경보전 의식 함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 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삭제 및 조신설 2020.5.6.)